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9회 임시회
'20. 3. 12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○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사유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 신설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충청북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도입
○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운영을 위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, 선정대리인의 임기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(안 제12조 신설)
○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신설)
○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 신설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○ 국세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 및 심사·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나,

※ '14 .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, 과세전적부심사에는 '20년부터 적용

-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발생해 옴.

○ 이에 「지방세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시행('20. 3. 2.)됨에 따라, 본 조례안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62조2제6항에 따라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,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, 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.

> □ **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62조2**
>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**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, 대리인의 임기·위촉**, **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·절차 등**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**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**[본조신설 2019. 12. 31.]

○ 조례안 제12조는 '소유 재산의 평가방법' 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,
- 「지방세법」제4조(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)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격의 산정가액)와 제4조(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)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조례안 제13조는 선정 대리인의 위촉, 임기, 해촉, 비밀유지, 표창,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- 제1항에서, 선정대리인 위촉대상은 「지방세기본법」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)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 중 관련 경력

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였고, 위촉 배제 대상으로 ▲「변호사법」 및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▲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· 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- 제3항에서,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제4항은 선정대리인의 해촉 사유에 대해 규정함.

- 제5항은 선정대리인이 해촉될 경우, 해촉된 선정대리인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. 단, 본 항은 문맥상, 제4항에 따라 해촉된 모든 선정대리인이 아닌 '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'에만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제한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음.
  따라서 이를 '제4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'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조례안	수정안
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맡은 사건에 대해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세전적부심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⑤ ---------- 제4항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-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비밀유지, 표창,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함.

○ 조례안 제14조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○ 다만, 현행 조례의 마지막 조가 제8조(시행규칙)임에도 불구하고, 본 조례안의 조 번호가 제12조부터 시작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.

- 따라서,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조례안	수정안
제12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	제8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
제13조(선정대리인의 위촉 등)	제9조(선정대리인의 위촉 등)
제14조(선정대리인 신청 · 통지 등)	제10조(선정대리인 신청 · 통지 등)
제8조(시행규칙)	제11조(시행규칙)

※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(2017. 4. 20.)에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 시, 제6조・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7조・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변경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, 행정안전부 내시 표준조례안(2020. 1. 16.)에 준하여 지방세 무료대리인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절차상으로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거친 바 문제가 없음.